#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성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20

발의연월일: 2024. 6 21.

발 의 자:정성호·민병덕·백승아

박희승 · 장종태 · 홍기원

염태영 · 송옥주 · 황 희

이병진 · 윤종군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 업무처리과정을 연계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함으로써, 형사사법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제정되었음.

그런데 최근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군과 민간 수사 및 사법기관간 연계가 강화되었음에도 이 법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편으로 수 자자료를 송부전달하는 등 비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이뤄지고 있음.

이에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국방부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위원에 국방부차관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2호, 제5조제1항, 제10조제1항 및 제17조).

#### 법률 제 호

#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"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"를 "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, 국 방부"로 한다.

제5조제1항 단서 중 "해양경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"를 "해양경찰청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국방부"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"해양경찰청 차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"을 "해양경찰청 차장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및 국방부차관"으로 한다.

제17조 중 "해양경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"를 "해양경찰청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국방부"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·운영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·운영되는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의 규정에 따른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,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"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"이	2
란 법원, 법무부, 검찰청, 경	
찰청, 해양경찰청, <u>고위공직</u>	<u>고위공직</u>
<u>자범죄수사처</u> 및 그 소속 기	자범죄수사처, 국방부
관과 그 밖에 형사사법업무	
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대	
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	
말한다.	
3. ~ 6. (생 략)	3. ~ 6. (현행과 같음)
제5조(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	제5조(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
위한 협력 의무) ① 형사사법	위한 협력 의무) ①
업무 처리기관은 판결문, 공소	
장, 영장, 조서 등 형사사법업	
무와 관련된 문서를 시스템을	
이용하여 저장 • 보관하여야 한	
다. 다만, 업무의 성격상 시스	
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	
우에는 법무부, 검찰청, 경찰청,	
해양경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	해양경찰청, 고위공직자범죄수
<u>수사처</u> 의 업무에 관하여는 대	<u>사처 및 국방부</u>

통령령으로, 법원의 업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예외를 정할 수 있다.

## ②・③ (생략)

제10조(협의회의 구성) ① 협의회는 법무부차관, 법원행정처 차장, 대검찰청 차장검사, 경찰청 차장, <u>해양경찰청 차장 및 고위</u> 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으로 구성한다.

#### ② (생략)

제17조(위임규정) 형사사법정보의 정확성 유지 등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법무부, 검찰 청, 경찰청, <u>해양경찰청 및 고</u> 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법원 관련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
<u>.</u>
· 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10조(협의회의 구성) ①
해양경찰청 차장, 고위
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및 국
<u>방부차관</u>
② (현행과 같음)
제17조(위임규정)
<u>해양경찰청, 고</u>
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국방부
•